

의학전문대학원건강관리운영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에 설치한 건강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운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대학원 재학생에 한 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위원회는 7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장(이하 ‘학생부장’이라 한다)과 학생대표는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 중 1명은 상담실장으로 하며, 상담실장은 대학원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, 당연직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.

① 재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

② 건강관리 운영에 따른 규정류에 관한 사항

③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
④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

⑤ 정신건강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

⑥ 성폭력에 관한 예방 및 상담은 본교 “성폭력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규정”을 준용 한다.

⑦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이용에 관한 사항

⑧ 기타 건강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소집 및 회의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회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 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공개금지) 공개금지 개인별 상담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

2-3-15~2 제3편 행 정

으로 하며, 공개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7조(기타사항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학
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